

창원지방법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11793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늘누리 담당변호사 신원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노경신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47,112,338원 및 그중 42,400,000원에 대하여 202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경남 합천군 E 전 1,326㎡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1. 11. 1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창원지방법원 합천등기소 2021. 11. 11. 접수 제213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20. 9. 25. 원고로부터 4,800만 원을 변제기한 2030. 9. 25., 지연배상금율 15%로 정하여 대출받았으나, 2021. 11.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22. 8. 4. 기준 남은 원금은 4,240만 원이고, 연체이자 4,712,338원이다.

나. 피고 B은 2021. 11. 11.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피고 C에게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피고 B: 자백간주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남은 원금 및 연체이자 합계 47,112,338원 및 그중 남은 원금 4,240만 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22.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배상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다가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적극재산은 없고, 소극재산만 3억 원이 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의 사해의사 및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D는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